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9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홍근 · 이상직 · 김원이

임호선 · 김수흥 · 조정식

강선우 · 윤미향 · 백혜련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 타격이 크게 나타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8천만원 미만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수준에 준하는 부가세 감면 특례를 한시적으로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V자형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시장경제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 확대와 관련하여 세원 누수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세원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첫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셋째,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 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도모하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사업자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	
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	<u>1</u>
<u>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13	억원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사업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
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	무의 면제) ①

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면 제6
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
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u>4천800만원</u>
② ~ ④ (현행과 같음)